##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허종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868

발의연월일: 2021. 10. 15.

발 의 자: 허종식 · 신동근 · 유동수

정일영 • 이성만 • 김정호

어기구 • 배진교 • 김교흥

박찬대 · 최종윤 · 이동주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

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증가 억제를 위한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이 2001.1.13. 시행되고 2007.5.25. 자연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매년 증가하는 화장 후 자연장 하는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자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는 "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려 장사"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함에 있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존 엄과 품격 있는 장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각 기 다른 장례비용 지원에 대하여 적정하고 표준화된 장례서비스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이 법 제33조의4에 따라 설치·운 영하는 장사지원센터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####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연장(自然葬)을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·화초·잔디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자연장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매년 증가하는 화장 후 자연장 이용 수요에 맞추어 친자연적이고 검소한 "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장사" 제도의합법적인 활성화가 요구됨에 따라 장사법이 정한 자연장의 형태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또한 매년 증가하는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장례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장사지원센터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(제2조, 제10조, 제12조, 제33조의4).

#### 법률 제 호

##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"묻어"를 "묻거나 바다에 뿌려"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묻기"를 "묻거나 바다에 뿌리기"로, "한다"를 "하며, 분골하여 바다에 뿌릴 때에는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15조에 따른 환 경관리해역 이외의 해역 또는 해양환경 오염 우려가 없는 해역에서 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"묻는"을 각각 "문 거나 뿌리는"으로 한다.

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④ 제2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함에 있어 장례의 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 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33조의4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1. ~ 2 (생 략)	제2조(정의) 1. ~ 2 (현행과 같음)
3. "자연장(自然葬)"이란 화장한	3
유골의 골분을 수목·화초·잔디	
등의 밑이나 주변에 <u>묻어</u> 장사	문거나
하는 것을 말한다.	<u>바다에 뿌려</u>
제10조(자연장의 방법) ① 자연장을	제10조(자연장의 방법) ①
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<u>묻기</u> 에	문거나
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<u>한다</u> .	<u>바다에 뿌리기하며,</u>
	분골하여 바다에 뿌릴 때에는
	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15조에
	따른 환경관리해역 이외의 해역
	또는 해양환경 오염 우려가 없
	는 해역에서 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	2
여 용기에 담아 <u>묻는</u> 경우 그 용	<u>묻거나 뿌리는</u>
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	
능한 것이어야 한다.	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<u>문</u>	③
<u>는</u> 방법,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	<u>거나 뿌리는</u>
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	
통령령으로 정한다.	
제12조(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)	제12조(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33조의4(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) 제33조의4(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) ① (생략)

1. ~ 2. (생 략)

<u> <신 설></u>

<u>3.</u> ~ <u>7.</u> (생 략)

② ~ ⑤ (생 략)

④ 제2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 고 시신 등을 처리함에 있어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① (현행과 같음)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

4. ~ 8. (현행 제3호부터 제7호 까지와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